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4가합19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5417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2 선고 2014가합1983 판결

전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주식회사 E

6. F

7. 주식회사 에스앤디스틸

변론종결 2016. 6. 3.(피고 1, 2, 3, 4, 5에 대하여)

2016. 7. 15.(피고 6, 7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399,004,793원 및 그 중 800,566,167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597,646,045원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나. 피고 B는 152,618,425원 및 그 중 152,462,202원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다. 피고 주식회사 E, B, C, D은 연대하여 351,178,418원 및 그 중 348,804,473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각 2014. 11.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57,191,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원고에게 57,1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디스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 E, F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디스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디스틸 사이에 2013. 9.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디스틸은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2013. 9. 9. 접수 제6695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아래 표 중 '보증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주채무자'란 기재 각 주채무자와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구분'란 기재와 같이 칭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피고 D은 2010. 3. 30. 입보)은 피고 A가 제1 내지 4약정에 관하여, 피고 E가 제6약정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대출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대출금액	20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0원

주채무자	피고 A	피고 B	피고 E
연대보증인	피고 B, C, D	(없음)	피고 B, C, D
보증번호	404060091	404080179	404200900278
보증원금	170,000,000원	425,000,000원 (382,500,000원으로 변경됨)	300,000,000원 (243,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일자	2006. 3. 31.	2008. 5. 28.	2009. 4. 22.
보증기한	2007. 3. 30. (2014. 3. 28.로 변경됨)	2009. 5. 28. (2014. 5. 23.로 변경됨)	2010. 4. 22. (2014. 4. 18.로 변경됨)

2) 원고의 대위변제 및 손해액 확정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중 '대위변제일' 기재 각 일시에 '대위변제금' 기재 각 금액을 '대출은행'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고, 제1, 4, 5, 6약정에 관하여 각 주채무자로부터 아래 표 중 '회수액' 기재 각 금액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한 뒤, 대위변제잔금(= 대위변제금 - 회수액)과 확정손해금을 아래 표와 같이 정산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4약정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비용으로 체당금 6,188,42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5,396,369원을 회수하여 792,051원이 남았다.

주채무자	피고 A	피고 B	피고 E
대출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사고일자	2013. 11. 27.	2013. 11. 8.	2013. 12. 18.
대위변제일	2013. 11. 27.	2013. 11. 8.	2013. 12. 18.
대위변제금	170,730,208원	385,625,156원	245,381,533원
회수액	1,170,730원	-	-
대위변제잔금	169,559,478원	385,625,156원	245,381,533원
확정손해금	384원	-	-
체당금	792,051원	-	-
소계	1,399,004,793원	152,618,425원	351,178,418원

[인정 근거]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결론

원고에게, ①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제1 내지 4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구상금 1,399,004,793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800,566,167원(= 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169,559,478원 + 제2약정 대위변제잔금 385,625,156원 + 제3약정 대위변제잔금 245,381,53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11. 27.부터, 597,646,045원(= 제4약정 대위변제잔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11. 8.부터, ② 피고 B는 제5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구상금 152,618,42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152,462,2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2. 18.부터, ③ 피고 E, B, C, D은 연대하여 제6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구상금 351,178,418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348,804,4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손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① 피고 F은 피고 A 대표이사인 피고 B의 형수이고, G는 피고 F의 딸이자 피고 B의 조카로서 2006. 1.경부터 2013. 2. 21.까지 피고 A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2.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A의 사원용 기숙사였는데, G의 남편 H이 2010. 10. 5. 피고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년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H은 위 전세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 F은 2013. 7. 30.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한 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8. 5.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은 H이 피고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20,000,000원은 H이 피고 A에 지급하였으며, 10,000,000원은 피고 F이 대출을 받아 피고 A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합계 3,712,962,534원, 소극재산은 합계 6,671,448,041원이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미시 I에 있는 J 제1동 제2001호(이 사건 아파트)	58,000,000원	대구은행	4,375,450,809원
구미시 K아파트 제106동 제1106호	188,000,000원	국민은행(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합2507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구상금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	2,133,073,605원
구미시 L 공장용지 19211 m ²	2,289,870,000원	우리은행	13,808,800원
구미시 M 공장용지	구미시(자동차세,	19,561,230원	

구미시 I에 있는 J 제1동 제2001호(이 사건 아파트)	58,000,000원	대구은행	4,375,450,809원
624 m ²	재산세 등)		
구미시 N 공장용지 982m ²	국민건강보험공단	45,909,880원1) 2013. 4. 7. 체납 건강보험료 15,069,610원 + 2013. 6. ~ 7. 체납 연금보험료 7,190,210원 + 2013. 4. ~ 7. 체납 고용보험료 6,788,180원 + 2013. 4. ~ 7. 체납 산재보험료 16,861,880원.	
위 각 공장용지 지상 단층공장 2채	11,486,500원	O(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위 각 공장용지 지상 제1 내지 3동, 제5 내지 8동, 제10 내지 12동, 제14동 공장건물	448,268,420원	P(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Power Press (KS-200) 외 기계 32대	716,972,000원	Q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R 대 633㎡ 중 180분의 1 지분	362,216원2) 633㎡ × 103,000원(2013. 1. 1. 기준 ㎡당 개별지가) × 1/180.	S(퇴직금)	2,651,540원
제주특별자치도 T 대 7㎡ 중 180분의 1 지분	3,398원3) 7㎡ × 87,400원(2013. 1. 1. 기준 ㎡당 개별지가) × 1/180.	U (임금 및 퇴직금)	2,566,620원
		V(임금 및 퇴직금)	5,365,826원
W(임금 및 퇴직금)	6,146,981원		
구미시(근로소득세)	3,495,240원		
X	3,417,510원		
H(전세보증금)	25,000,000원		
소계	3,712,962,534	소계	6,671,448,041원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피고 A가 2013. 10. 17. 약속어음 부도로 도산하자, 원고는 제1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약정에 따라 대구은행 및 국민은행에 피고 A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2013. 11. 27.경 합계 1,399,004,79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라) 근저당권 말소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3. 19. 채권최고액 20,800,000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8. 6.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808,8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내지 13, 15,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바 1 내지 7, 9, 14 내지 17, 20 내지 23호증, 을바 제8, 10, 12, 13,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A가 제1 내지 4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 A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보증사고가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약 4개월 뒤 부도가 나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 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0억 원가량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F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H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한 부분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나머지 부분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적극재산 감소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와 피고 F 사이의 관계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채무자인 피고 A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명의자는 피고 F이지만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H이 지급하였고(피고 F도 실제 매수인이 H과 G임을 시인하고 있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2010. 10. 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H과 G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②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받게 된 점, ③ H과 G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나 피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 F의 주장 내용이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 F, A, B와 G, H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F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의 범위는 아래 나.항과 같다.

나.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Y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7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57,191,200원(= 71,000,000원 - 13,808,80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A와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57,191,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57,1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디스틸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 1) 인정사실 ① 피고 A는 2012. 9. 11.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에스앤디스틸(이하 '피고 에스앤디스틸'이라 한다)로부터 영상기기부품제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아왔다.
- ② 피고 C은 피고 A의 피고 에스앤디스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9. 피고 에스앤디스틸과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에스앤디스틸에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호증,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호증의 1, 2, 이 법원의 선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지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A의 피고 에스앤디스틸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해주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앤디스틸은, 피고 A가 피고 에스앤디스틸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엘지전자에 납품을 계속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사해행위 여부 판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에스앤디스틸은 2012. 11.부터 2013. 5.까지 7개월간 월평균 20,000,000원 상당의 철강을 피고 A에

공급해왔는데, 피고 A로부터 엘지전자에의 납품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3. 6.에는 기존 공급량의 4배가 넘는 90,492,625원 상당의 철강을, 2013. 7.에는 168,173,165원, 2013. 8.에는 232,371,775원 상당의 철강을 각 공급하게 된 점, ② 그로 인하여 매출채권액이 급증하자 피고 에스앤디스틸은 피고 A에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두 통보를 하였고, 피고 A는 위 통보를 받고 피고 에스앤디스틸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가 피고 에스앤디스틸에 대하여 이미 200,000,000원가량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 A가 2013. 8.경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해왔고, 피고 에스앤디스틸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2013. 9.에 223,893,227원, 2013. 10.에 157,780,797원 상당의 철강을 추가로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 공급을 위한 담보설정이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인데, 이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서 피고 A가 사업을 계속하고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여 대출은행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면 피고 C도 보증채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C의 입장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오로지 소극재산만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 A와 피고 에스앤디스틸 사이의 거래규모와 내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에스앤디스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에스앤디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스앤디스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현석

판사김유미

별지

- 1) 2013. 4. 7. 체납 건강보험료 15,069,610원 + 2013. 6. ~ 7. 체납 연금보험료 7,190,210원 + 2013. 4. ~ 7. 체납 고용보험료 6,788,180원 + 2013. 4. ~ 7. 체납 산재보험료 16,861,880원.
- 2) $633\text{m}^2 \times 103,000\text{원}(2013. 1. 1. \text{ 기준 } \text{m}^2\text{당 개별지가}) \times 1/180$.
- 3) $7\text{m}^2 \times 87,400\text{원}(2013. 1. 1. \text{ 기준 } \text{m}^2\text{당 개별지가}) \times 1/180$.